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1998. 6. 13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8. 6. 1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61회 부천시의회(입사회) 제1차 총무위원회(98. 6. 1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강석준)

가. 제안이유

○ 원미구청사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의 원미구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○ 원미구청사 소재지 변경(안 제2조)

· 현행 :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-2번지

· 개정 :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음

4. 토론요지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85호
의결년월일	98. 6. 20 (제61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6. 13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○ 원미구청사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의 원미구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

☐ 주요골자

○ 원미구청사 소재지 변경(안 제2조)

· 현행 :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-2번지

· 개정 :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·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부천시 원미구청 소재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기 관 명	소 재 지
부천시 원미구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제2조(사무소 소재지) (생략)		제2조(사무소 소재지) (현행과 같음)	
기관명	소재지	기관명	소재지
부천시청	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	-----	-----
부천시 원미구청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7-2번지	-----	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
부천시 소사구청	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	-----	-----
부천시 오정구청	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0번지	-----	-----